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14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13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2023. 9. 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박다미 의원)

- 가. 제안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부터 제4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5조부터 제6조)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명시(안 제7조)
○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안 제9조부터 제10조)
○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강남구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
- 이를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야외운동기구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영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배상해야하는 공적 책임이 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외 수혜적 효력이 필요한 자치법규라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잘 관리된 운동기구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조례에 해당함.
- 주요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관련 내용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 점검 및 영조물배상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내용상 큰 쟁점사항은 없으나, 행정조직 내 문제점을 보면, 공원시설 등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의 장이 거의 모든 관리, 점검, 보수 및 영조물배상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나, 총괄부서인 생활체육과의 역할은 안 제10조의 처리 결과 취합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와 안전점검(안 제9조) 등의 “구청장” 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인 생활체육과로 보아야 할 것임.
 - 조문 배치상의 문제로는 제6조가 조문 제목을 “설치기준 등” 으로 설정하고 있

지만, 실제 내용은 규격이나 규모 등의 대략적 기준을 제시함 없이 설치원칙 이
나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그리고, 안 제5조(설치장소) 중 제4호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장소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타당성이 약해 보여, 안 제6조의 제3
항으로 이동하고, 안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은, 국민의 안전한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방지 등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의원 발의로 그 제도적 공백을 메우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14호

제안일자 : 2023.9.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생활체육과가 구청장을 대행한 야외운동기구의 총괄 관리부서임을 뚜렷이 드러내고, 일부 조문 배치와 구성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총괄부서인 생활체육과의 역할 명확화(안 제2 조제3호)
- 설치장소 및 원칙 등 조문 내용에 따른 배치 및 구성수정(안 5조 및 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총괄부서”란”을 ““총괄부서”란 구청장을 대신하여”로 한다.

안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설치기준 등)”을 “(설치원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청장을 대신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
2.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강남구 및 그 산하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원칙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락처	

